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2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7982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10. 22.
판 결 선 고	2015. 11. 2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과세내역표 제1, 2항 기재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 B [redacte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redacted]로부터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2.부터 2015. 6. 30.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세 및 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201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 및 교육세는 납부하였으나, 201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2015년 제1기분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는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게 위와 같이 체납한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 및 가산금(별지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음)을 2015.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1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에 대한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가 조세부과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납부고지는 원고에 대한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부과한 처분이 아니라 체납한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의 납부를 독촉하는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2

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의 경우 그 부과일자가 각각 2014. 6. 10. 및 2014. 12. 10.이고, 원고가 위 각 부과처분을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그에 대한 쟁송기간이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일(2015. 7. 17.) 이전에 이미 도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납부고지 중 201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별지 과세내역표 제1, 2항 기재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에 관한 부분은 쟁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거나, 그에 관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을 다투는 소는 부적법하다(다만 2015. 6. 10.자로 부과된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및 교육세에 관한 부분은 90일의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이 2012년 10월 중순경 '지금 사고 난 차가 있는데 이 차를 수리해서 팔면 500만 원 이상 수입이 되니 빨리 차를 사자.'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C이 이후 연락을 끊어 2014. 1. 10. C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원고가 수소문 끝에 2014년 6월 말경 이 사건 자동차가 있는 공업사(양주시 D에 있는 E공업사)에 가보니 C이 2013. 6. 30. 위 공업사에 차를 수리해달라고 맡긴 후 소식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 C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경위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한 번도 타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2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2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같은 법 제124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 규정상 자동차등록원부에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실상 이를 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및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과세기간 동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라 할 것이다. 설령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운행이익을 누리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C으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한편, 원고가 제시한 갑 제6호증의 1, 2(각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는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과태료에 관한 것으로, 위 과태료는 이 사건 자동차세 및 교육세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2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과세내역표 제1, 2항 기재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연욱

판사 민병국

판사 박혜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2

과세내역표

순번	과세기간	부과일자	세목	세액 (원)
1	2014. 1. 1. ~ 2014. 6. 30.	2014. 6. 10.	자동차세	159,760
			교육세	47,920
			가산금	6,220
			합 계	213,900
2	2014. 7. 1. ~ 2014. 12. 31.	2014. 12. 10.	자동차세	149,770
			교육세	44,930
			가산금	5,830
			합계	200,530
3	2015. 1. 1. ~ 2015. 6. 30.	2015. 6. 10.	자동차세	149,770
			교육세	44,930
			가산금	5,830
			합 계	200,5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2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 (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 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일할계산)하여 양수인에게 부과·징수하는 경우
5. 제5항에 따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끝.